

의료기관 휴업(폐업)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일
개설자	성 명(법인명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
	의료기관 명칭	① 종류	
	의료기관 소재지	② 요양기관기호	
휴업기간 또는 폐업일	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 휴업 [] 폐업 []	폐업일(최종진료일 익일로 작성) 년 월 일	
	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	재개업일(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) 년 월 일	
	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	(주소) (전화번호)	
	휴업 또는 폐업 사유 (※ 신청대상 번호란 []에 "√" 표시)	01. 대표자 사망[] 02. 고령(건강상)[] 03. 학업목적[] 04. 경영상[] 05. 취업[] 06. 종류변경(의원↔병원)[] 07. 면허취소[] 08. 업무정지[] 09. 그 밖의 사유[]	

「의료법」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날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(법인만 제출합니다) 2. 「의료법 시행령」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
------	---

작성 방법

-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.
[종류기호]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([]일반 []장애인 의료재활시설) 06정신병원 07의원 08치과의원 09한의원 10조산원
-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(8자리)를 적습니다.

유의 사항

- 종합병원·병원·치과병원·한방병원·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(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)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(「의료법」 제33조 및 제40조).
- 허가를 받지 않고 종합병원·병원·치과병원·한방병원·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(「의료법」 제88조).
- 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,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(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)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(「의료법」 제33조 및 제40조).
-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(「의료법」 제90조).
-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(「의료법」 제92조).
-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).

처리 절차

신고서 작성 신고인	➔	접수	➔	검토	➔	결재	➔	확인서 발급
처리기관 (시장·군수·구청장)								